

공 고

●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1-34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“폐문부재, 이사 및 수취인 불명(부재)”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10.12.

대전전파관리소장(관인생략)

「전파법령 위반(정기검사 미이행)」 무선국 행정처분(운용정지 1개월) 알림

1. 근거법령 :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(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)
2. 법령위반사항 : 정기검사 미이행(전파법 제24조 제4항)
3. 처분내용 :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
4. 처분일시 : 운용정지 1개월(2021.10.29. ~ 2021.11.27.)
5. 대상무선국 : [붙임]참조
6. 참고사항
 - 가.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(벌칙)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나.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(☎042-602-0114)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(☎042-520-415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<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>

순번	허가번호	호출명칭	시설자명	위반사항	시설자 주소
1	42-2005-50-0000082	211○○○○호	이○○	정기검사 미이행	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
2	42-2019-50-0000295	235○○호	구○○	정기검사 미이행	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